

탄소중립 분야

-CBAM 간소화 개정안-

EU 옵니버스 패키지 제안서 '25.02.26.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TBT 종합지원센터
R&I Center

목차

1. 규제 개요 및 경과	1
2. 규제 내용	4
3. 산업계 대응방안 및 시사점	9
4. 관련 법령 및 표준	10
5. 참고자료	11

규제 개요

EU 옴니버스 패키지 (Omnibus Package)

2025년 2월 26일, EU 집행위는 지속 가능성 보고 및 실사에 대한 옴니버스 패키지 제안서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CSRD, CSDDD, EU Taxonomy, CBAM 등 규정 간소화 및 효율적 적용 목적의 개정안이 포함됨

[표 1] EU 옴니버스 패키지 주요 개정사항

규제	규제명	주요 개정 내용
CBAM	<p>[CBAM 간소화 및 강화 개정안] COM (2025) 87: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6 as regards simplifying and strengthening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수입업체 면제 - 절차 단순화
CSRD	<p>[CSDDD 적용 연기] COM (2025) 80: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s (EU) 2022/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the dates from which Member States are to apply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대상 기업 축소 - 보고 기준 간소화 - 중소기업 부담 완화
CSDDD	<p>[CSDDD 개정안] COM (2025) 8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s 2006/43/EC, 2013/34/EU, (EU) 2022/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시점 1년 연기 - 실사 대상 축소 - 실사 요건 간소화 등
EU Tax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대상 기업 축소 - 보고 기준 간소화 - 평가 의무 축소

■ CBAM 간소화 개정안

EU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규정 (EU) 2023/956 개정안에는 소규모 수입 업체 면제 기준, 배출량 계산 및 검증, CBAM 신고 및 인증서 구매 등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명확화하고 간소화함

- 중소기업 의무 면제, 절차 간소화, 배출량 산정 방식 단순화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 경감
- 대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 면제가 CBAM 도입 목표를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유럽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

▶ CBAM 규정 개정안을 통한 규제 변경사항 ('25.2.26.)

- CBAM 규정 면제 기준
- CBAM 신고 관련 사항
-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절차
- CBAM 재정 책임
- CBAM 대상 품목

● 규제 경과

■ 'EU Green Deal'의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 CBAM 도입 예고

2019년 12월, 유럽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 패키지인 EU Green Deal을 발표, 탄소 중립 달성 수단으로 CBAM의 도입을 예고함

■ 'Fit for 55' 패키지 내 CBAM 입법안 공개

CBAM은 2021년 7월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 에 포함된 핵심 법안 중 하나로 포함됨

■ CBAM 입법안 최종 승인 및 전환기간 시작

2023년 5월, EU 집행위 CBAM 입법안이 최종 승인되었으며,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CBAM 전환기간 진행 후 2026년부터 확정기간 돌입

- 2023년 8월,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을 통해 전환기간 내 CBAM 대상 제품 보고 의무 규정

■ CBAM 등록부, 신고자 승인에 대한 세부 이행규정 발표

2024년 10월, CBAM 등록부, 신고자 승인에 대한 이행규정 발표

- 2024년 12월, CBAM 등록부에 대한 이행규정 채택
- 2025년 3월, CBAM 신고자 승인에 대한 이행규정 채택

●● 향후 일정

[표 2] CBAM의 향후 일정

세부 정책	일정(예정)	주요 내용
옴니버스 패키지(2차)	2025년 2분기	중견기업 지원, 행정 부담 완화
옴니버스 패키지(3차)	2025년 3분기	투자 간소화
CBAM 추가 이행방안	2025년 중반	[CBAM 세부 이행 규정 발표] 간접배출, 검증, 검증기관 인증, 탄소 가격, 세관용 정보, 대륙붕 (continental shelf), 평균 ETS 가격, CBAM 신고,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론, 무상 할당 등에 대한 세부 이행규정 순차적 발표
CBAM에 대한 포괄적 검토	2025년 하반기	[포괄적인 CBAM 검토보고서 공개] - EU ETS 부문 및 다운스트림 공정에 대한 확대 범위 평가 - 대상 품목 전체에 대한 간접배출량 포함 검토 - 제3국 탄소 누출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 방안 검토 * 탄소 시장 및 탄소 가격 외교 Task force EU 역외 국가에 효과적인 탄소 가격 정책과 국제 탄소 시장 접근 방식 개발 지원
CBAM 확장을 위한 개정안 제안	2026년 1분기	절차 간소화 및 2027년에 적용 가능한 EU 역외 국가 기본 탄소 가격에 관한 내용 포함 예정
EU ETS 무상할당 폐지	2034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CBAM 적용 업종도 포함), 2034년에는 모든 배출권 유상할당 체제로 전환

CBAM 간소화 및 강화 개정안

CBAM 규정 면제 기준 변경

EU 내 CBAM 관련 기업 중 상위 약 20%의 기업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97%를 차지하므로 소규모 업체(약 80%)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CBAM 면제 기준이 기존의 금액 기준(개별 수입 제품당 150유로 미만 면제)에서 질량 기준(연간 수입량 50톤 미만 면제)으로 변경

- 면제 조항을 통해 약 18만 개의 수입업체(전체 수입업체의 약 91%)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
- CBAM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물량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수입하는 것을 방지
- 면제 대상 수입업체는 면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준을 초과한 이후에 상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 CBAM 신고자 자격을 받기 위한 허가 신청 필요
- 기준을 초과하기 전에 허가받지 않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한 벌금 부과

* 벌금 납부 시, 수입업체는 CBAM 신고서 제출 및 인증서 반납 의무 면제

[표 3] CBAM 면제 기준 개정사항

	현행	개정 후
면제 대상	개별 150유로 미만의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	연간 50톤 미만을 수입하는 수입업체
면제 기준	금액 기반	질량 기반

CBAM 신고 관련 변경

기존 신고자 승인 절차의 복잡성과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의 행정 부담으로 인해 신고자의 업무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고자 승인 절차의 간소화와 신고 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표 4] 신고자 승인 개정사항

	현행	개정 후
신고자 승인	회원국 간의 협의 절차 필수	회원국 간의 협의 절차 선택 사항
신고자 대리인	승인된 신고자가 등록부를 통한 신고서 제출, 변경 사항 등록 등 업무 진행	제3자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업무 진행 가능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절차 간소화

기존 CBAM 규정에서는 특정 국가의 신뢰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 데이터가 없는 경우, 전체 평균값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국가별 산업 구조 및 에너지 믹스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수입업체가 제품의 내재 배출량을 신고할 때 실제 배출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기본값(default values)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기본값을 적용한 배출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 의무를 면제함

또한, EU ETS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별도의 설비로 수행되는 마감 공정의 내재 배출량은 배출량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며, ETS와의 중복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 EU 내 생산된 전구물질이 제3국 수출 후 다시 CBAM 적용 제품으로 수입될 때는 해당 전구물질의 배출량을 제외함

- 각 지역의 에너지 믹스, 산업 구조, 생산 방식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더욱 정교하게 배출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 수출기업은 기본값을 사용할 때는 검증이 면제되어 검증 비용 절약이 가능하며, 기본값과 실제 배출량 신고 중 더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 EU ETS의 적용을 받는 전구물질의 배출량을 제외함에 따라 규제의 이중 적용 방지

[표 5]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정사항

	현행	개정 후
기본값 산정 방식	특정 국가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전체 평균값 사용	탄소 배출 강도 상위 10개 국가의 평균 배출 강도를 기준으로 설정
기본값 사용 조건	실제 배출량 산정이 불가할 때 입증 후 기본값 사용	조건 없이 기본값 사용 가능
산정 범위	모든 다운스트림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산정	EU ETS에서 다루지 않는 마감 공정 탄소 배출량 산정 범위 제외 (일부 철강, 알루미늄 전구물질 배출량만 산정)
검증	기본값을 사용한 배출량에 대하여 검증	기본값을 사용한 배출량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
전구물질	EU에서 생산된 전구물질이 제3국에 수출된 후 CBAM 대상 제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전구물질의 배출량 포함	EU에서 생산된 전구물질이 제3국에 수출된 후 CBAM 대상 제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전구물질의 배출량 제외

■ CBAM 재정 책임 관련 변경

CBAM 인증서의 사전 구매 비율이 기존 80%에서 50%로 완화되었으며, 인증서 환매(환불) 제한 한도 확대, 인증서의 판매 개시일 및 환매되지 않은 인증서 취소일 조정 등으로 기업의 과도한 인증서 확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이와 함께 EU ETS의 제출 기한이 4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된 것에 맞추어, CBAM 신고서 및 인증서 제출 기한 역시 동일하게 변경을 통해 기업의 보고 일정을 일관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기존 규정에서는 신고한 내재 배출량에 대해 원산지 국가에서 기지불한 탄소 가격을 직접 산정 및 보고 후에 인정받아야만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감면 청구가 가능하였으나, 감면 혜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상품의 원산지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기지불한 탄소 가격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감면 적용하도록 개정함

또한, 제3국의 기지불 탄소 가격의 기본값(Default Carbon Value)을 도입해 기본값 사용과 실제 탄소 가격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함

- CBAM 신고자는 제출해야 할 인증서 수량 차감을 위해 제3국의 탄소 가격 기본값을 사용하거나, 실제 기지불한 탄소 가격을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제를 요청하는 방식 중 한 가지 선택 가능
- EU 집행위는 탄소 가격제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제3국에 대해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본 탄소 가격(Default Carbon Price)’을 CBAM 등록부를 통해 공표 예정(2027)
- 탄소 가격 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제3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최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EUR/tCO₂eq.로 표시되는 연평균 탄소 가격(Annual Average Carbon Price) 공표 예정

[표 6] CBAM 재정 책임 관련 개정사항

	현행	개정 후
인증서 사전 구매 비율	CBAM 인증서 사전 구매 비율 80%	CBAM 인증서 사전 구매 비율 50%
인증서 환매 제한	전년도에 구매한 인증서 총량의 1/3	전년도에 제출한 CBAM 인증서 총량까지 환매 가능
인증서 판매 개시일	2026년 1월 1일	2027년 2월 1일
환매되지 않은 인증서 취소일	-	매년 11월 30일
신고서 및 인증서 제출 기한	매년 5월 31일	매년 8월 31일
탄소 가격 공제 기준	원산지 국가 기지불 탄소 가격 입증	제3국 탄소 가격 기본값 사용 또는 실제 기지불한 탄소 가격 신고 및 증빙 중 한 가지 방식 선택 가능

CBAM 대상 품목 변경

도자기 제조의 주요 원재료인 기타 고령토질 점토에 속하는 비소성 점토는 시멘트와의 관련성이 적고 탄소 배출량이 낮아 CBAM 대상 품목에서의 제외하며, 전기 에너지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와 동일하게 직접 배출량만 포함하는 CBAM 대상 품목으로 추가함

[표 7] CBAM 대상 품목 개정사항

	현행	개정 후
기타 고령토질 점토	CN CODE 2507 00 80 – Other kaolinic clays	CN CODE 2507 00 80 – Other kaolinic clays(비소성 점토 제외)
전기 에너지	간접배출량을 포함하는 품목	직접 배출량만 포함하는 품목 (간접배출량 제외)

이해관계자별 대응 사항

CBAM 간소화 개정안을 통해 신고자(수입업체 또는 간접 통관 대리인*), 회원국의 세관 당국, 국가 관할 당국(NCA), EU 집행위 등 이해관계자별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각 이해관계자는 해당 사항을 파악해야 함

* 간접 통관 대리인: 수출입 업체가 유럽 회원국에 위치하지 않아, 수출입 업무에서 수출 입자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통관 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

[표 8] 이해관계자별 대응 사항

이해관계자	대응사항
<p>신고자 (수입업체 또는 간접 통관 대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 수입업체 또는 세관신고서를 대신 제출하는 간접 통관 대리인 * 수입업체를 대리하는 대리인은 CBAM 신고자 자격 승인 항상 필요 - 연간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기준을 초과한 이후에도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CBAM 신고자 자격을 받기 위한 허가 신청 필요 - 기준을 초과하기 전에 허가받지 않은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입된 모든 상품에 대한 벌금 부과 * 벌금 납부 시, 수입업체는 CBAM 신고서 제출 및 인증서 반납 의무 면제
<p>회원국의 세관 당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당국으로 필요한 정보 및 데이터 제공 - 수입업체가 기준(연간 누적 중량 기준 50t)을 초과한 경우 해당 수입업체가 그해 말까지 또는 CBAM 신고자 지위를 획득할 때까지 추가 상품 수입 허가 금지
<p>국가 관할 당국(NC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정보 기반 수입된 상품의 모니터링 및 임계값 준수 여부 평가 필요 - 신고자의 CBAM 의무 면제 해당사항 검토 및 결정 * 수입자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정보를 세관 당국으로 통보 필요
<p>EU 집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정보 기반 수입된 상품의 모니터링 및 임계값 준수 여부 평가 필요 - 관할 당국으로 필요한 정보 및 데이터 제공 필요

산업계 대응방안

CBAM 규정 면제 기준의 변경으로 수출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CBAM 대상 제품인지 확인하는 동시에, EU 내 수입업체가 연간 50톤 이상 CBAM 대상 제품을 수입하는지 파악하여 CBAM 대응을 준비해야 함. 다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품목의 경우, 수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고 의무 부담은 여전할 것이 유력함

CBAM 개정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규제 강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탄소 배출 감축 및 데이터 관리 역량이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 CBAM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 될 위험이 존재함

간소화 개정을 통해 기본값 사용에 제약이 없어졌으나, 기본값을 사용하는 것보다 실제 배출량을 신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지도 고려해야 함. 수출기업은 기본값 사용 시 면제되는 검증 비용을 고려하여 수입업체와 협의하여 CBAM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일부 제품 가공 공정의 배출량 산정 제외를 통해 데이터 수집이 불필요해졌지만, 공정 대부분은 여전히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므로 외주업체의 데이터 수집 노력은 여전히 요구됨

시사점

CBAM 규제 강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구매 의무가 시행되고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내부 배출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탄소감축 전략을 수립해야 함

CBAM의 시행을 통해 EU 내 시장에서 탄소 배출량이 낮은 저탄소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 감축, 저탄소 원재료 사용, 사업장 내 재생에너지 사용 등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해야 함

전환기간인 2025년 말까지 CBAM 세부 이행 규정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EU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도 유사한 탄소 국경세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국제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최근 발표된 1차 옴니버스 패키지 외에도 중견기업 지원,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2차 옴니버스 패키지가 2025년 2분기에, 투자 간소화 관련 내용이 담긴 3차 옴니버스 패키지가 2025년 3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므로 관련 동향 예의주시 필요함

● 관련 법령

국가명	법령명
유럽연합 (EU)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유럽연합 (EU)	COM (2025) 87: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6 as regards simplifying and strengthening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기관	제목 (링크)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COMPASS)	CBAM 헬프데스크 분석 보고서 EU CBAM 규제 간소화 개정 입법안 주요 내용
유럽연합(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유럽연합(EU)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유럽연합(EU)	COM (2025) 87: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6 as regards simplifying and strengthening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유럽연합(EU)	The Clean Industrial Deal: A joint roadmap for competitiveness and decarbonisatio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EU 경제통상 브리핑(제25-11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EU 경제통상 브리핑(제25-16호)
하나루프(HanaLoop)	EU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 CBAM 개편안 설명 (https://www.hanaloop.com/docs/x20_environment-general/CBAM/2025-02-27-CBAM-Omnibus/#hanaloop-%EC%9D%98%EA%B2%AC-1)
엔츠(aents)	CBAM 단순화 조치: 주요 개정 내용과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https://aents.co/posts/cbam-%EB%8B%A8%EC%88%9C%ED%99%94-%EC%A1%B0%EC%B9%98-%EC%A3%BC%EC%9A%94-%EA%B0%9C%EC%A0%95-%EB%82%B4%EC%9A%A9%EA%B3%BC-%EC%88%98%EC%B6%9C%EA%B8%B0%EC%97%85%EC%9D%98-%EB%8C%80%EC%9D%91-%EC%A0%84%EB%9E%B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U 청정산업계획 및 기업 지원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평가
OECD	What to expect from th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what-to-expect-from-the-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719d2ff9-en.html)
Lexology	EU Publishes Competitiveness Compass Outlining Economic Policy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ca928124-b8bc-4e07-a1f4-0482c15c8be9)

주 의

- 본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최신 규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본 보고서는 TBT종합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무단 배포 및 변경할 수 없으며, 상업·법률적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TBT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KnowTBT 포털을 통해 더 많은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www.knowtbt.kr).

Tel. : 02-3487-6148

Fax : 02-571-0003

E-mail : tbt@kotica.or.kr

